



제148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공시설을 혼인예식 장소로 개방하는 규정 신설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1007호)

2024.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 옥 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참고사항	2
IV. 검토의견	3
1. 공공시설을 혼인예식 장소로 개방하는 규정 신설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수진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6. 27.

다. 회 부 일 : 2024. 6.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단체 등의 건전한 가정의례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허례허식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1999년에 제정되었음. 주요 내용으로 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건전가정의례 준칙 제정,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공공기관의 혼인예식 장소 적극 개방,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으며, 이 법을 근거로 유지하고 있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은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른 행정행위가 거의 없어 법률의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다만 위 준칙의 폐지에 따라 공공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하는

조항이 사라지므로, 이 조항을 「건강가정기본법」에 이관하고자 하는 것임.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0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공공시설을 혼인예식 장소로 개방하는 규정 신설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단체 및 국·공립 대학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 그 밖의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2(혼인예식 장소의 제공)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단체 및 국·공립 대학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 그 밖의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폐지를 전제로, 해당 규정의 내용을 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1)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단체 및 국·공립 대학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 그 밖의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현행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이며, 해당 법에 따른 행정행위가 거의 없어 법률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문화되고 있어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입법정책적으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할 경우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혼인예식 장소로 개방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공공기관 등의 장이 강당 등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개방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그 근거를 둘 필요가 있으며, 예비부부들의 결혼 비용 절감을 통한 복지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할 경우 관련 내용을 이관하려는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이 법률안은 이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0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하므로, 이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는 경우 공공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하는 조항을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649